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50호

2017. 6. 26.

건명	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산림공원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연월일	2017. 6. 12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7. 6. 12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사항에 있어 사이버 시민과 일반 시민간의 합리적 차등 감면을 위하여 감면요율을 조정하고,
-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주민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 요율을 사이버 시민과 동일하게 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,
- 휴양림 시설 중 기존 캠핑용 야영데크장을 개선하여 글램핑장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휴양욕구에 부응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시설사용료 감면 요율을 사이버 논산시민은 현행 30퍼센트(성수기 20퍼센트)에서 20퍼센트(성수기 15퍼센트)로 조정하고,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 주민에 대하여 20퍼센트(성수기 15퍼센트)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8조제3항제3호, 안 별표2)
- 캠핑용 야영데크장을 개선하여 글램핑장으로 변경 조성됨에 따라 현행 캠핑용 야영데크 규정을 삭제하고 글램핑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안 별표2)

### □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